

임원선출규정

제1장 총칙 <개정 2025.10.17>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2조5의 임원선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개정 2025.10.17>

제2조(임원자격) 각 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 단, 여기서의 역임은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임기를 모두 마친 것을 말하며,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역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1. 회장 : 임원을 2회 이상 또는 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
2. 부회장 :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. 단 관계·산업계 소속 정회원 중 건축문화, 기술, 학술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임원을 역임하지 않아도 임명직 부회장으로 선임할 수 있다.

<개정 2021.9.10>

3. 지회장 : 각 지회규약의 임원선출에 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회원
4. 이사 : 가. 정회원으로 입회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자
나. 건축문화, 기술, 학술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
5. 참여이사 : 가.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정회원
나. 지회장을 역임한 만 58세 이상의 정회원과 4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
다. 건축문화, 기술, 학술의 발전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정회원

6. 감사 : 2회 이상 임원을 역임한 정회원 <개정 2021.9.10 법령및규정분류체계에 따라 조항호목 표기>

제3조(임원 선거권)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정회원으로 승인된 지 5년 이상 경과하고, 선거인 명단확정일 기준,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한다. <개정 2025.10.17.>

제2장 회장 및 부회장 선거 <개정 2025.10.17.>

제4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 선거과정을 공정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결성한다. <개정 2025.10.17.>
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9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.
- ④ 위원이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등록 전에 본 위원회에서 사퇴하도록 한다.
- ⑤ 전항의 경우 위원회의 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
-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장은 회의소집 전,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하여야 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
- ⑧ 선거관리위원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-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신임회장 취임과 동시에 해산한다.

제5조(선거공고) 선거관리위원장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를 위하여 회장의 임기만료 90일 이전에 선거공고를 한다. <개정 2025.10.17.>

제6조(임원선출방법) ① 회장은 유효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로 확정한다. 다만 동일득표시에는 연장자로 한다.

② 삭제 <2025.10.17.>

③ 연구3, 지회 담당부회장 선거에서는 각각의 투표에 1인을 기표하며, 당선자는 유효득표수가 가장 많은 자로 한다. 다만 동일득표시에는 연장자로 한다. <개정 2021.9.10.>

④ 단, 부회장 선거시 후보자 등록이 없거나 미달인 경우에는 회장이 해당 부회장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<신설 2022.4.15.> <개정 2025.10.17.>

제7조(후보자 등록 및 사퇴) ① 회장 및 부회장 후보자는 선거공고일 이후 5일에서 10일 사이에 소정의 서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7.>

② 회장 후보자는 임원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2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단, 직전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. <개정 2025.10.17.>

③ 부회장 후보자는 지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, 임원 선거권을 가진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한편, 지회장은 지회담당부회장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7.>

④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7.>

제8조(선거운동)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.

제3장 임명직 부회장 선임 <신설 2025.10.17.>

제9조(부회장 선임) 회장은 부회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부회장 후보자 중 9명을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 <본조신설 2025.10.17.>

제10조(부회장추천위원회) ① 임명직 부회장 선임과정을 공정하게 관장하기 위하여 회장 및 부회장 선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부회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② 부회장추천위원회는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 자격은 각 호와 같다.

1. 총무담당부회장

2. 차기 회장(당선자)

3. 회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이내

4. 차기 회장(당선자)이 추천하는 자 4인 이내

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.

④ 위원은 전공, 출신교, 지역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며, 동일 출신교(학사·석사·박사 모두 포함) 위원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.

⑤ 위원장 및 위원 중 부회장 후보자로 추천될 경우, 본 위원회에서 즉시 사퇴해야 한다.

⑥ 전항의 경우, 정상적인 위원회의 운영이 불가하다라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.

⑦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. 다만, 위원장은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
⑧ 위원장은 회의소집 전, 위원들에게 회의 안건을 통보해야 한다.

⑨ 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고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.

⑩ 부회장추천위원회는 신임부회장이 총회에서 인준됨과 동시에 해산한다.

<본조신설 2025.10.17.>

제11조(부회장후보심사 및 추천) ① 부회장추천위원회는 제2조의 임원자격을 갖춘 자 중 회원자격기준, 리더쉽역량, 전문지식·업적, 학회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부회장 후보를 선정한다. 단, 추천하는 부회장 후보는 동일 출신교 비율이 전체 후보자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(학사·석사·박사 모

두 포함).

② 위원회는 후보자 수의 1.5배수 이내로 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한다.

③ 위원회는 부회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별지 제0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서
2. 별지 제0호 서식의 후보자 추천경과 요약서
3. 부회장추천위원회 회의록

<본조신설 2025.10.17.>

제4장 기타

제12조(비밀유지) 선거관리위원회 및 부회장추천위원회의 위원 및 사무국 직원은 임원선출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,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본조신설 2025.10.17.>

부칙

(규정시행) 본 규정은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1970년 10월 5일 제정된 임원선출위원회 규정은 동일부로 폐지한다.

본 규정은 1993년 4월 7일부터 시행하며 1979년 6월 1일 개정된 임원선출위원회 규정은 동일부로 폐지한다.

1. 본 규정은 199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199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4. 본 규정은 200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5. 본 규정은 200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6. 본 규정은 2002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7. 본 규정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8. 본 규정은 200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9. 본 규정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10. 본 규정은 2007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11. 본 규정은 2009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.
12. 본 규정은 201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13. 본 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14. 이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15.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16. 이 규정은 201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.
17. 이 규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18. 이 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19. 2021년 9월 10일에 개정된 규정의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2022년 선임된 임명직 부회장의 자격에 한하여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. <2022.6.10. 신설>
20.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